## 보수비의 의미 및 범위
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의 규정은 "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한다. 다만, 그 건물 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한다."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"건물은 그 구조·이용상태·면적·내구연한·유용성·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한다."고 규정하고 있는바, 위 제23조의7 단 서에서 규정한 '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'라 함은 그 본문 규정과 관련 하여 볼 때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현저히 곤란 하지 아니한 경우 라고 할 것이고, 위 규정에 의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수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에서 건물 등의 보상에 있어 원칙적인 평가기준 으로 정하고 있는 이전료는 대상물건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 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점(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),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, 이전이 현저 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잔여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.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 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도로, 구로, 담장, 울 등 시 설이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그 시설이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나 공사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. 토지수용법 제47조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 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, 구거, 장책 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. 그 건물의 잔여 부분 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. (대법원 2000.10.27. 선고 2000두 5104 판결) ※같은 뜻의 판례: 대법원 1993.08.27 선고 93누9064 판결 ; 1995.03.03 선고 93더 55296 판결 ; 1997.10.24 선고 97다31175 판결